환경부 공고 제2006-2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부과제외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 2)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별표 2 및 안 제10조제1항제7호)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제3호)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가 내지 라목)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안 제11조)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별표 2 비고 4)

바. 기타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제1항)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이하 (2) 500㎖초과 나. 유리병 (1) 500㎖이하 (2) 500㎖초과 다. 금속캔 (1) 500㎖이하 (2) 500㎖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화장품	유리병 (1) 30㎖이하 (2) 30㎖초과 100㎖이하 (3) 100㎖초과	 개당 8.3원 개당 12.4원 개당 25.5원
3.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4.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5. 1회용기저귀	1회용기저귀	개당 8.2원
6.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20개비당 27.8원
7.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384원 (단,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1차 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kg당 328원)

※ 비고 :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7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제품에 사용된 재활용한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부 칙

별표 2(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의 개정요율 및 금액은 2008년 및 2009년에는 100분의 20, 2010년 및 2011년에는 100분의 60, 2012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다만, 현행 부과요율이 연도별 인상요율보다 높은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9), 팩스(02-504-9210), 전자우편(dharma@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6. 6

환 경 부

1. 개정 이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 2)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별표 2 및 안 제10조제1항제7호)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제3호)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가 내지 라목)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안 제11조)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별표 2 비고 4)

바. 기타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제1항)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상품을 말한다). 단,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용기와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의 다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연간 플라스틱사용량이 10,000kg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kg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다른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을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0조 제2항제3호의 가 내지 라목에서 규정한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각목에서 정한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단, 제4호 품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제2항의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2항의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 2(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의 개정요율 및 금액은 2008년 및 2009년에는 100분의 20, 2010년 및 2011년에는 100분의 60, 2012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다만, 현행 부과요율이 연도별 인상요율보다 높은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이하 (2) 500㎖초과 나. 유리병 (1) 500㎖이하 (2) 500㎖초과 다. 금속캔 (1) 500㎖이하 (2) 500㎖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화장품	유리병 (1) 30㎖이하 (2) 30㎖초과 100㎖이하 (3) 100㎖초과	 개당 8.3원 개당 12.4원 개당 25.5원
3.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4.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5. 1회용기저귀	1회용기저귀	개당 8.2원
6.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20개비당 27.8원
7.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384원 (단,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1차 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kg당 328원)

※ 비고 :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7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제품에 사용된 재활용한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목의 플라스틱제품(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제외한다)	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상품을 말한다). 단,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용기와 합성수지섬유제품은 제외한다.
가. 제1차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나. 건축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다. 포장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포장용플라스	

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라.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마. 기타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형·장난감·오락용품, 사무·회화용품, 가구제품, 끈·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동일)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 스틱제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품	3----------

가.~나.(생 략)	가.~나. (현행과 동일)
다.~마.(신 설)	다. 연간 플라스틱사용량이 10,000kg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 량이 100kg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다른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및 감면) ----------. 다만,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가 내지 라목에서 규정한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각목에서 정한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12조(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생 략)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	제12조(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현행과 동일)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한다.	산출된 금액에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단, 제4호 품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신 설>	③제2항의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3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수량을 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제13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2항의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